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소득세율 적용(강대식의원안)	3

I. 개요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7.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소득세율 적용(강대식의원안)

현행	강대식의원안																																																																						
☐ 종합소득 세율(제55조) ☐ 종합소득 적용 세율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소득세율 적용 ☐ <u>자녀 수에 따른 차등 소득세율 적용</u> - <u>자녀 수 1명: (기본세율 - 2%p)</u> - <u>자녀 수 2명: (기본세율 - 3%p)</u> - <u>자녀 수 3명 이상: (기본세율 - 4%p)</u> - <u>그 외: (현행과 같음)</u>																																																																						
<table><tr><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400만원</td><td>6%</td></tr><tr><td>1,400만원~5,000만원</td><td>15%</td></tr><tr><td>5,000만원~8,800만원</td><td>24%</td></tr><tr><td>8,800만원~1억 5,000만원</td><td>35%</td></tr><tr><td>1억 5,000만원~3억원</td><td>38%</td></tr><tr><td>3억원~5억원</td><td>40%</td></tr><tr><td>5억원~10억원</td><td>42%</td></tr><tr><td>10억원 ~</td><td>45%</td></tr></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	45%	<table><tr><th rowspan="3">종합소득 과세표준</th><th colspan="4">세율</th></tr><tr><th colspan="3">자녀 수</th><th rowspan="2">그 외</th></tr><tr><th>1명</th><th>2명</th><th>3명~</th></tr><tr><td>~1,400만원</td><td>4%</td><td>3%</td><td>2%</td><td>6%</td></tr><tr><td>1,400만원~5,000만원</td><td>13%</td><td>12%</td><td>11%</td><td>15%</td></tr><tr><td>5,000만원~8,800만원</td><td>22%</td><td>21%</td><td>20%</td><td>24%</td></tr><tr><td>8,800만원~1억 5,000만원</td><td>33%</td><td>32%</td><td>31%</td><td>35%</td></tr><tr><td>1억 5,000만원~3억원</td><td>36%</td><td>35%</td><td>34%</td><td>38%</td></tr><tr><td>3억원~5억원</td><td>38%</td><td>37%</td><td>36%</td><td>40%</td></tr><tr><td>5억원~10억원</td><td>40%</td><td>39%</td><td>38%</td><td>42%</td></tr><tr><td>10억원 ~</td><td>43%</td><td>42%</td><td>41%</td><td>45%</td></tr></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자녀 수			그 외	1명	2명	3명~	~1,400만원	4%	3%	2%	6%	1,400만원~5,000만원	13%	12%	11%	15%	5,000만원~8,800만원	22%	21%	20%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3%	32%	31%	35%	1억 5,000만원~3억원	36%	35%	34%	38%	3억원~5억원	38%	37%	36%	40%	5억원~10억원	40%	39%	38%	42%	10억원 ~	43%	42%	41%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자녀 수			그 외																																																																			
	1명	2명	3명~																																																																				
~1,400만원	4%	3%	2%	6%																																																																			
1,400만원~5,000만원	13%	12%	11%	15%																																																																			
5,000만원~8,800만원	22%	21%	20%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3%	32%	31%	35%																																																																			
1억 5,000만원~3억원	36%	35%	34%	38%																																																																			
3억원~5억원	38%	37%	36%	40%																																																																			
5억원~10억원	40%	39%	38%	42%																																																																			
10억원 ~	43%	42%	41%	45%																																																																			

* 강대식의원안 2024. 6. 7. 제출(의안번호 191)

☐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에서 2%p, 2명인 경우 3%p, 3명 이상인 경우 4%p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동일한 소득 하에 보다 낮은 세율에 직면하도록 세율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짐.

먼저 소득세율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법 제정시에는 17개 과표 구간에 최고세율은 65%였고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75년 70%에서 1989년 50%,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 2005년 35%로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최고세율은 2011년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 · 35%에서 2012년 종합소득금액 3억원 초과 · 38%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최고세율 구간(38%)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되었다가, 이후 다시 2017년에 5억원 초과 40%, 2018년에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으로 통해 하위 2개 소득구간의 확대 조정이 이루어졌음.

다만,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자녀의 유무, 의료비 지출 등 특정 조건 충족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해왔을 뿐 소득 외에 다른 조건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한 예는 없음.

[2009년~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추이]

연 도 구 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1,200만원	6%							6%	
1,200만원 ~1,400만원	16%	15%					15%		
1,400만원 ~4,600만원		24%						24%	
4,600만원 ~5,000만원	25%	24%					24%		
5,000만원 ~8,800만원		35%						35%	35%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38%		
1.5억원 ~3억원				38%	38%	38%			
3억원 ~5억원			40%			40%			
5억원 ~10억원					42%	42%	45%		
10억원 ~								45%	

주: 귀속소득 연도 기준

□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유무 및 자녀의 명수에 따라 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자녀 수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²⁾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자녀 양육을 위한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지원은 출산유인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특히 기본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장려금, 기저귀·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유자녀가구의 세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15만원	연 35만원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법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단,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한도없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59-4②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자녀 장려금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가치세	면세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자녀가구와 독인가구의 세 부담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생 및 양육에 따른 추가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¹⁾]

(단위: %, %p)

국가	2자녀 외별이가구 조세격차 ²⁾	독인가구 조세격차 ³⁾	차이
독일	33.1	47.9	14.8
미국	19.7	29.9	10.2
프랑스	39.1	46.8	7.8
대한민국	19.1	24.6	5.5
일본	27.9	33.0	5.1
OECD 평균	25.7	34.8	9.1

주: 1) 조세격차(tax wedge)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r costs, 급여 및 고용주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에서 ‘개인소득세+사회보험료-현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3)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득을 받는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 세부담 수준)는 24.6%이고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는 19.1%의 조세격차에 직면해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5.5%p로, OECD 평균인 9.1%p의 60%에 불과함³⁾.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⁴⁾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대상자 중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만을 세율 조정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조정 요소에서 배제된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의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을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저소득 면세자⁵⁾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의 상위금액 과세표준의 세율이 무자녀가구의 하

3) OECD, "Taxing Wages 2024", 2024

4)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2022

5) 2022년 귀속소득 기준 면세자 비중은 33.6%임

위금액 과세표준의 세율보다 낮아져⁶⁾ 역진적 세율체계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세율이나 과세단위보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6) 무자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2자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